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7. 12 선고 2023가단531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하동규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3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사 노연주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목포시 D, E에 있는 F아파트 G동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H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및 상가

1층 522.16㎡

2층 522.16㎡

3층 522.16㎡

4층 522.16㎡

5층 522.16㎡

6층 522.16㎡

7층 423.84㎡

8층 423.84㎡

9층 423.84㎡

10층 423.84㎡

11층 423.84㎡

12층 423.84㎡

13층 225.15㎡

14층 142.56㎡

15층 142.56㎡

지하층 1460.3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목포시 D 전 3057㎡

2. 목포시 E 입야 5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I 철근콘크리트조 59.97㎡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3107분의 26.33 끝.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기금인 'J'의 관리기관입니다.

①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국가기금인 'J'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② 'J'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금입니다.

[표1]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J)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A단체에 J(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제5조(관리기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A단체에서 취급한다.

나. 소외 C는 원고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원고가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아래 [표2]의 기재와 같이, ① C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② 그러나 C는 K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③ 이에 원고가 2023. 3. 17. K은행에게 합계 114,267,995원을 대위변제 하였습니다(갑 제 1 내지 4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위변제증서).

[표2]

순 번	보증번호	보증서 발급일	대출일	대출금액(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위 변제일	대위 변제금	보증 상대처
1	L	2017.10.16	2017.10.16	130,000,000	2022.10.16	2023.03.17	114,267,995	K은행
				110,500,000				

다. C와 피고의 증여계약

C는 2022. 8.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겠습니다)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사전구상권의 발생

(가) ① 주채무의 이행기의 도래 등 민법 제442조 제1항 소정의 사유나 기타 신용보증 약정에서 따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0다38947 판결), ②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다25504).

(나) ① C의 K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기가 2022. 10. 16. 도래함에 따라 다음날인 2022. 10. 17. 원고의 C에 대한 110,500,000원^{주)}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보증부채무 중 원금

(2) 사후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2023. 3. 17. C의 K은행에 대한 채무 중 114,267,995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같은 날 원고의 C에 대한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였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가) ①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권 및 사후구상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2022. 8. 17.)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아래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일(2022. 8. 17.)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구상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2개월 지난 2022. 10. 17.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점, ③ 다시 그로부터 5개월 지난 2023. 3. 17. 원고가 C의 K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라) 즉, 위 (나)항에 기재한 대법원 2011다76426 판결의 취지 및 위 (다)항에 기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권 및 사후구상권 모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체권이 될 수 있습니다.

3.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됩니다(2005다33602 판결).

(2) ① C 소유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습니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1)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본인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C와 피고의 주소지가 같고,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의 배우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악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5.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증여계약일(2022. 8. 17.) 이후인 2022. 8. 1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을구 순위 5, 6번 M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N시세 기준 7,000만 원이고(갑 제6호증 N시세), 위 을구 순위 5, 6번 M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3,500만 원¹⁾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7,000만 원에서 위 3,500만 원을 공제한 3,500만 원²⁾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자 합니다.

6. 결어

위와 같이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1) 을구 순위 5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900만 원, 담보비율이 130%로 보이는 점, 을구 순위 6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600만 원, 담보비율이 120%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소송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및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하여 가액배상액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